

사전 편집본

배포: 일반 2026년 2월
16일

원문: 영어

인권이사회

제61차 회의

2026년 2월 23일~4월 2일

의제 항목 4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인권 상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

요약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의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58/17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인 정치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며, 향후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한다.

* 본 보고서는 제출 기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 사유로 인해 마감일 이후에 회의 담당 부서에 처리 요청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본 문서의 부록은 접수된 그대로, 제출된 언어로만 수록되었습니다.

I. 서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부 국제 인권 기제와 어느 정도 협력해 왔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 4차례 참여했으며 수백 건의 권고안을 지지했다. 유엔 인권 기구와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5년, 지난 10년 동안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일부 단편적인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¹ 본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도출된 권고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가 국민의 인권 실현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한다.

II. 현재의 정치 및 인권 상황

2. 북한이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지역에 약 1만 4천 명의 군인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 연방에 제공한 지원은 양국 간의 군사적·경제적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 정부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방송하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개인들에게 국경을 넘어 전단지를 살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대화 재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²추구, 그리고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국가의 적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³ 2025년 10월 총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 대한민국, 미국이 실시한 군사 훈련을 비판하며, “우리 국가의 법이자 국가 정책이며 주권이자 생존권인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⁴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방문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회담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2025년 11월, 일본의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는 남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⁵ 2025년, 유엔 회원국들로 구성된 기구인 다자간 제재 감시단(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⁶은 군사 협력⁷에 관한 보고서와 북한이 이야기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⁸에 관한 보고서, 총 두 건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식량 생산과 관련하여, 2025년에 채택된 농장 결산 및 소득 분배에 관한 법률은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수확물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들의 “열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⁹ 또한 국영 언론은 11월에 계획된 건설 사업에 대해 보도했으며,

¹ A/HRC/60/58, 제50항.

² https://unikorea.go.kr/web/eng_unikorea/bbs/bbs_0000000000000167/351?cp=1&sortOrder=&sortDirection=&bclId=bbs_0000000000000167 참조.

³ <https://kcnawatch.xyz/newstream/1753655893-503765603/press-statement-of-kim-yo-jong-vice-department-director-of-c-c-wpk/>.

⁴ https://gadebate.un.org/sites/default/files/gastatements/80/kp_en.pdf 참조.

⁵ www.japantimes.co.jp/news/2025/11/03/japan/politics/takaichi-north-korea-kim-summit/ 참조.

⁶ 다자간 제재 감시단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된 후 11개국이 설립했다.

⁷ www.mofa.go.jp/files/100853978.pdf 참조.

⁸ www.mofa.go.jp/files/100922716.pdf 를 참조하십시오.

⁹ <https://kcnawatch.xyz/newstream/1756546737-611559344/session-of-permanent-commission-of-spa-standing-committee-held/> 참조.

양강도에서 수천 채의 농촌 주택 건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¹⁰ 이전의 이러한 사업에서는 안전 조치나 적절한 휴식 없이 동원된 사람들의 강제 노동이 동원되었다. 인구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는 계속되어 왔으며 더욱 강화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며, 이러한 카메라의 설치 비율이 증가했다.¹¹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국가를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25년에는 단 224명의 탈북자(여성 198명, 남성 26명)만이 대한민국에 도착했다.¹² 2026년 1월 26일, 도쿄 지방법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지상낙원’ 캠페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4. 유엔 인권 기구들은 계속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 왔다. 2025년 7월, 특별보고관은 일본을 첫 공식 방문하여 도쿄, 니가타, 오사카를 방문했다. 그녀는 국경을 넘어 자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침해 행위의 일환인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피해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외국인의 역사적 납치 및 강제 실종,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에 대한 군인 파견, 해외 근로자 파견, 탈북자 탄압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북한의 초국적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다.¹³ 2025년 3월 25일, 인권 이사회는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주기 내 북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채택했다.¹⁴ 2025년 9월 25일, 이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심화 상호 대화를 개최했다. 이 대화에서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가 여성에게 미치는 악화된 영향과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기울인 수많은 노력을 강조했다. 2025년 8월 11일과 12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제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회 보고서를 검토했다.¹⁵ 조선장애인보호연합회 중앙위원회, 외무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보건성 관계자들로 구성된 평양 대표단은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했다.

5.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가하였으며, 2025년 11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산림 복원 사업을 포함한 자연재해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¹⁶ 또한, 해당국은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도출된 기후 변화 및 조기 복구, 재난 대비, 위험 완화에 관한 권고 사항을 지지했다.¹⁷ 해당국은 기후 변화 및 완화 전략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산림 파괴는 해당국에서 빈번한 홍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농민들은 자급용 식량 재배와 소액의 소득 창출을 위해 산악 지대의 개인 경작지에 의존해 왔다. 정부는 곡물 생산을 통제하고 산림 복원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개혁의 일환으로 개인 경작 금지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¹⁸

¹⁰ <https://kcnawatch.xyz/newstream/1763460182-109535867/rural-dwelling-houses-built-in-ryanggang-province/> 참조.

¹¹ www.asiapress.org/rimjin-gang/2025/11/photo/cctv-2/ 참조.

¹² www.unikorea.go.kr/web/eng_unikorea/contents/statistics_defectors 참조.

¹³ A/80/149.

¹⁴ 인권이사회 결정 58/108을 참조하십시오.

¹⁵ CRPD/C/PRK/CO/1.

¹⁶ DPRKOREA_cop30cmp20cma7_HLS_FR.pdf 참조.

¹⁷ A/HRC/58/11, 130.146항 및 130.147항.

¹⁸ www.asiapress.org/rimjin-gang/2025/04/society-economy/agricultural_reform-6/ 참조.

6. 2025년 11월 6일, 특별보고관은 다른 4명의 임무 담당자들과 함께 “반국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사면을 부여하는 법령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동 서한¹⁹을 보냈다. 임무 수행자들은 유엔 인권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정치범 석방을 권고해 왔으며, 이 법령이 이행된다면 긍정적인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법령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청했다.

III. 북한의 보편적 정례 검토 참여

7. 2006년에 설립된 보편적 정례 검토는 정부 간 기구이자 국가 주도의 절차로서, 이를 통해 모든 국가의 인권 실적이 4년 반마다 검토됩니다. 이 검토 절차는 검토 대상국, 유엔 시스템, 국가 인권 기구, 시민 사회 단체 및 지역 정부 간 기구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각 국가에 대한 검토 결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토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이 도출된다. 검토 대상국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5/1 부속서 제32항에 따라 각 권고안에 대해 찬성 또는 유보(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9년, 2014년, 2019년, 2024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절차를 거쳤다. 2009년에는 44개국으로부터 받은 167건의 권고 사항 중, 해당 국가는 처음에 50건을 “거부”했으며 나머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4년, 제2주기 심사를 앞두고 북한은 제1주기에서 남은 117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제2주기 국가보고서의 부록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81개를 수용하고, 6개를 부분 수용하며, 15개를 유보하고, 15개를 거부했다”.²⁰ 2014년, 해당국은 83개국이 제시한 267개 권고사항 중 114개를 “수용”하고 153개를 “거부”했다. 2019년, 해당국은 87개국으로부터 총 266개의 권고사항을 받았다.²¹ 그중 135개를 “수용”하고 131개를 “거부”했다. 2024년, 해당 국가는 86개국에서 제출한 294건의 권고안을 접수하였으며, 143건을 “수용”, 7건을 “부분 수용”, 144건을 “거부”했다.²²

IV. 인권 지표 체계를 활용한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사항의 이행 및 모니터링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 보고서, 보편적 정례 검토(UPR) 기간 중의 성명, 그리고 권고안에 대한 “수용”, “거부” 또는 “부분 수용” 및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별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는 그 자체로 해당 국가가 어떤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제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권고안을 “거부”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¹⁹ PRK 3.2025호 서신을 참조하십시오. <https://spcommreports.ohchr.org/Tmsearch/TMDocu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²⁰ 참조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ohchr.org%2Fsites%2Fdefault%2Ffiles%2Flib-docs%2FHRBodies%2FUPR%2FDocuments%2FSession19%2FKP%2FA_HRC_WG.6_19_PRK_1_DemocraticPeoplesRepublic_of_Korea_Annex_E.doc&wdOrigin=BROWSELINK.

²¹ A/HRC/42/10.

²² A/HRC/58/11/Add.1.

비록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제 사회가 특정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²³

10. 보편적 정례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해당 국가가 권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거나 국제적 협력을 모색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경우, 국제사회가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여러 검토 주기에서 동일한 권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경우에는 권고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적 정례 검토 과정에서 지지된 일부 권고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용한 권고 사항을 세분화하고, 해당 국가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권고 사항의 이행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지표²⁴를 사용하여 측정 가능한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국가와 국제 기구가 해당 국가의 수용 권고 사항 이행 진척 상황을 추적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 셋째, 선별된 권고안들을 검토해 보면 특정 권리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일반적인 권고안은 지지되었으나, 동일한 권리나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권고안들은 대부분 다양한 이유로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권고안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검토 대상국(이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1.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보고관은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이를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다.²⁵ 제4절에서 특별보고관은 제3차 및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 사례를 활용하여, 네 가지 주제(생명권, 이동의 자유권, 식량권, 노동권)와 한 가지 특정 집단(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⁶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개발한 인권 지표 표를 인용한다.²⁷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지표를 이행 노력에 통합하고, 권고 이행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제5차 검토 주기를 위한 국가 보고서에 관련 데이터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선정된 권리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와 최근 더욱 악화된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핵심 인권 사안들을 대표한다. 생명권 및 이동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일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지하지 않는 권리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지하는 권고 사항의 영역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협력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량권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오랜 사안이다.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노동권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국가가 비교적 논의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집단적 권리로서, 국내의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²³ 본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서 도출된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지지’ 및 ‘참고’라는 정립된 용어를 사용한다.

²⁴ 인권 지표란 인권 규범 및 기준과 관련될 수 있고, 인권 원칙과 관심사를 다루며 반영하며, 인권 증진 및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대상, 사건, 활동 또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²⁵ www.ohchr.org/en/calls-for-input/2025/call-input-sr-dprks-2026-hrc-report-upr-recommendations 참조.

²⁶ www.ohchr.org/en/hr-bodies/upr/kp-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3차 및 제4차 주기 권고 사항 매트릭스를 참조하십시오.

²⁷ www.ohchr.org/en/node/99915 참조.

A. 생명권

1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보장된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평가할 수 있다: (a) 임의적인 생명 박탈 금지; (b) 개인의 비자발적 또는 강제 실종 금지; (c) 기본적인 보건 및 영양; (d) 사형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 이러한 분야에서 제3차 및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시된 권고 사항은 주로 보건 및 영양, 그리고 사형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 생명의 임의적 박탈 금지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 기간 동안 생명의 임의적 박탈과 관련하여 두 건의 권고를, 제4차 검토 기간 동안에는 두 건의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 및 모든 정치범 석방과 관련된 권고를 포함하여 그 어떤 권고도 지지하지 않았다.

14. 고등판무관에 따르면, 탈북자 여러 명이 “구금 중에 주로 고문과 학대, 과로, 영양실조, 자살로 인한 사망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²⁸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맥락에서 볼 때, 구금 조건은 임의적인 생명 박탈과 관련이 있다.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즉각적이고 자유로우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지지했다.²⁹ 북한 당국이 해당 권고를 지지한 것은 수감자들을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관련 국경 제한 조치로 인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은 북한을 떠나야 했으며, 이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15. 특히,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구금 시설의 환경이 인신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관한 의무에 부합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구금 환경을 보장하며 구금 조건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구금 조건과 관련된 두 가지 권고안을 처음으로 지지했다.³⁰

16. 고등판무관은 지난 10년 동안 수감자 처우에 있어 명목상의 개선이 있었다고 보고했다.³¹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2년에 새로 제정된 교정시설 수감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수감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유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에 따라 도서관 이용, 적절한 위생 및 신체 운동을 보장한다고 밝혔다.³²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노력을 주목하며, 조명, 환기, 온도, 위생, 영양, 식수, 야외 활동 및 신체 운동, 개인 위생, 의료 서비스, 적절한 개인 공간과 같은 구금 환경 조건의 중요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³³ 대 표단은 수감자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독방에 감금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고 설명했으나, 법 집행 공무원이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7.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정한 두 가지 조치의 이행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제안한다.

²⁸ A/HRC/60/58, 20항.

⁽²⁹⁾ A/HRC/42/10, 126.58항.

³⁰ A/HRC/58/11, 130.68항 및 130.69항.

³¹ A/HRC/60/58, 제22항.

³² <https://webtv.un.org/en/asset/k1s/k1siu17x8h> 참조.

³³ 넬슨 만델라 규칙 제42조를 참조하십시오.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가 다음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a) 신체적 및 비신체적 학대 또는 범죄 혐의로 공식 조사를 받은 법 집행 공무원의 수 및 비율;
- (b) 징계 조치나 기소로 이어진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공식 조사 건수 및 비율;
- (c) 여성 수감자 1인당 성별 감수성 및 인권 기준(예: 여성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규칙 및 여성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 조치(방곡 규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여성 교도 및 지원 직원 수;
- (d) 구금 시설 내 비침습적 선별 검사 방법의 대체적 사용과 관련된 규정 또는 공식 정책의 채택에 관한 데이터;
- (e)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수용된 구금자 또는 수감자의 수 및 비율;
- (f) 2024년 11월부터 제5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기간까지 유엔 인권 기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포함한 독립 기관이 구금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한 모니터링 방문 횟수;
- (g) 보고 기간 중 석방된 “반국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수 및 비율, 그리고 해당 기간 종료 시점에 여전히 구금 중인 수감자의 수;
- (h) 보고 기간 중 영양실조,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구금 중 사망자 수.

2. 개인의 강제 실종 또는 비자발적 실종

18. 북한은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강제 실종과 관련된 3건의 권고를, 제4차 검토 과정에서 8건의 권고를 받았으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다. 강제 실종 또는 비자발적 실종은 생명과 협약이 보장하는 기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나타내는 일련의 행위 및 부작위를 구성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국가에 의해 자행된 강제 실종 및 납치 사건은 유엔이 충분히 입증해 온 오랜 우려 사항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한국인이 납치되어 한국 밖으로 이송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 군인 41,971명 중 19,409명의 전쟁 포로가 아직 송환되지 않았다. 일본에 거주하던 총 93,340명의 조선계 주민과 그들의 일본인 배우자³⁴가 더 나은 삶을 약속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환”했다. 또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일본 및 기타 국가 출신 수백 명이 납치되어 행방불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516명을 전후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1969년 12월 11일 납치된 대한항공 YS-11편에 탑승했던 11명은 여전히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납치된 피해자들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억류되어 있다.

19. 북한은 강제 실종에 관한 권고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건설적인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유엔 기구, 인권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권고안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권고안에는 동의했다.³⁵

³⁴ A/HRC/25/CRP.1, 제917항.

³⁵ A/HRC/58/11, 제130.28, 130.30, 130.34 및 130.35항.

20. 인권 기구 중 하나인 강제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강제 실종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강제 실종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실질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았으며, 현재 외국인 납치 사건을 포함하여 477건의 미해결 사례가 남아 있다.³⁶ 인권 기구와의 협력 증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특별 보고관은 해당 국가가 다음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 (a) 보고 기간 동안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통보한 사건 중 해당 국가가 답변한 건수;
- (b) 관련 회원국과 함께 사안이 명확히 규명된 사례 수.

3. 보건 및 영양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기간 중 보건 및 영양 분야 권고안 12건 전부를 지지하였으며, 제4차 검토 기간 중에는 권고안 24건 전부를 지지했다. 각국이 제시한 권고안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건권 및 식량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 데 개방적임을 시사한다.

22.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해당국은 영아 사망률 및 영양실조율 감축에 관한 권고안을 지지했다.³⁷ 이 나라가 마지막으로 영아 및 산모 사망률을 발표한 것은 2017년이었으며,⁽³⁸⁾ 이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이러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2019년 유엔이 추산한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4.299명이었다. 이 권고안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추정 영아 사망률은 소폭 상승하여 1,000명당 14.536명을 기록했다.³⁹ 2023년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67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20년 66명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⁴⁰

23. 제4차 검토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예방 가능한 영아 및 모성 사망률을 향후 4년 이내에 현재 수준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라는 이 분야의 권고안을 다시 지지했다.⁴¹

24. 이는 측정 가능하고 성과 중심의 권고 사항입니다. 차기 주기 보고 시, 해당국은 주별 및 도시-농촌 지역별로 세분화된 영아 및 모성 사망률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전 상황을 수집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해당 국가가 유엔 기구의 지원을 받아 사회권 관련 전국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제4주기 국가 보고서에서 해당 국가는 “생아 1,000명당 신생아 사망률을 6명 미만으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2명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고했다.⁴² 이러한 유형의 측정 가능한 권고 사항은 국가가 먼저 기준선이 될 현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측정 가능한 권고 사항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³⁶ A/HRC/60/35, 제3절.

³⁷ A/HRC/42/10, 제126.164항.

³⁸ www.unicef.org/dprk/media/156/file/MICS.pdf 참조.

³⁹ https://data.unicef.org/resources/data_explorer/unicef_f?ag=UNICEF&df=GLOBAL_DATAFLOW&ver=1.0&dq=PRK.CME_MRY0.&startPeriod=1970&endPeriod=2024 참조.

⁴⁰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은행그룹 및 유엔 사무국 경제사회국 인구과에서 발표한 추정치는 <https://ir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ho.int/server/api/core/bitstreams/29f43a3d-2228-489c-b1e7-b2f28e9101ce/content>.

⁴¹ A/HRC/58/11, 제130.130항.

⁴² A/HRC/WG.6/47/PRK/1, 67항.

25.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을 포함한 지표를 통해 두 가지 지지된 권고 사항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제안한다.

- (a) 학교 급식 및 강화 혼합 식품과 같은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는 5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수유부의 비율;
- (b) 숙련된 보건 인력이 분만을 도운 출산의 비율(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3.1.2 참조);
- (c) 모성 사망률(지속가능발전목표(SDG) 3.1 목표 참조);
- (d)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 시설을 갖춘 의료 시설의 비율(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6.1.1 및 6.2.1 참조).

4. 사형

26.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주기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에 관한 13개 권고 사항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4차 주기에서는 사형과 관련된 권고안 중 2건을 처음으로 지지했으나, 사형 집행 유예와 관련된 권고안을 포함한 나머지 11개 권고안은 지지하지 않았다. 북한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형을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을 지지했다.⁴³

27. 2001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제출된 해당 국가의 초회 보고서를 인권위원회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수가 33개에서 5개로 축소된 점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환영했다.⁴⁴ 해당국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에 있어 후퇴를 보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020년 이후 해당국은 또한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여러 법률을 제정했다. 2022년 5월 17일 개정된 형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11가지 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국가 전복 음모(제61조), 테러 행위(제62조), 국가 반역(제63조), 공화국의 존엄 모독(제64조), 파괴 활동(제 65), 외국인에 대한 적대 행위(제69조), 국가에 대한 반역(제70조), 아편 양귀비 불법 수확(제234조), 마약 불법 제조(제 235조), 마약 밀수 또는 판매(제237조), 고의적 잔혹 살인(제305조)이다. 2023년 12월 24일, 국가는 형법을 추가로 개정하여 5가지 범죄에 대해 사형 규정을 신설했다: 반국가 선전 또는 선동(제66조), 무기 또는 탄약의 불법 제조 (제80조), 무기 또는 탄약의 불법 사용(제81조), 폭발물의 불법 제조 또는 보관(제117조), 폭발물의 불법 사용 또는 양도(제118조)에 대한 사형 규정을 추가했다.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비준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든 사형을 수반하지 않았던 범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변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⁴⁵ 따라서 협약 비준 이후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형법 신규 조항에 따라 사형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도 있다.⁴⁶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극히 악랄한 동기로 타인의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 한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⁴⁷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일부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⁴³ A/HRC/58/11, 제130.65항 및 제130.66항.

⁴⁴ CCPR/CO/72/PRK, 4항.

⁴⁵ 인권위원회, 생명권에 관한 제36호 일반의견(2018), 34항.

⁴⁶ A/HRC/60/58, 24항.

⁴⁷ A/HRC/WG.6/47/PRK/1, 제18항.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용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고의적 살인을 수반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⁴⁸ 특별보고관은 공개 처형이 재도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제4차 검토 주기 동안 국가와의 대화 과정에서,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⁴⁹ 공개 처형 폐지 권고안을 지지하지 않았다.⁵⁰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개 처형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형벌을 금지하는 협약 제7조에 위배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⁵¹

29. 이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지지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 (a)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된 범죄의 수, 특히 1981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 당시 사형에 처할 수 없었던 범죄 중 고의적 살인을 수반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
- (b) 사형 집행 대기 중인 유죄 판결자의 수(연령, 성별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유형별로 구분);
- (c) 사형 집행 건수 및 방법(연령, 성별, 지역별로 구분).

B. 이동 자유에 대한 권리

30. 이동의 자유 권리 보호를 위한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a) 영토 내 이동의 자유;

(b) 자국으로 귀환할 자유; (c)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 및 (d) 국외로 출국할 자유.

31. 제3차 및 제4차 검토 주기 동안, 주로 영토 내 이동의 자유와 국외 출국의 자유와 관련된 몇 가지 권고가 제시되었다.

1. 영토 내 이동의 자유 및 국외 출국의 자유

32.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토 내 이동의 자유 및 출국 자유와 관련된 세 가지 권고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권고안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는 여행 허가증 제도를 통해 국내 이동을 더욱 제한하고, 국민의 비공식 상업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울타리와 초소를 확대함으로써 국경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여행 허가증, 행정적 허가 및 출국 비자를 요구하는 관행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제한하며, 이는 협약 제12조에 위배된다.⁵²

33. 보편적 정례 검토 제3차 및 제4차 사이클 사이에 후퇴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4차 사이클에서 모든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한 권고안을 지지했다.⁵³ 그러나 해당국은 해외 및 국내 여행 허가 요건을 폐지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하라는 등 보다 구체적인 권고안들은 지지하지 않았다.⁵⁴ 이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⁴⁸ 인권위원회, 일반의견 제36호 (2018), 제35항.

⁴⁹ <https://webtv.un.org/en/asset/k1s/k1siu17x8h> 참조.

⁵⁰ A/HRC/58/11, 제131.21항 및 제131.29항.

⁵¹ 인권위원회, 일반의견 제36호 (2018), 제40항.

⁵² CCPR/CO/72/PRK, 제19항 및 제20항.

⁵³ A/HRC/58/11, 제103.85항.

⁵⁴ 동서, 제130.87항.

권고 사항은 해당 권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행의 장애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기 때문에

34. 특별보고관은 채택된 권고안의 이행 현황과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외 친척과 접촉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체포하거나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부 및 인민안전부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명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그녀는 국가가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 (a)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강제 송환되어 반국가 범죄 혐의로 수감된 수감자 수;
- (b) 형법에서 삭제된 국내 무단 이동 및 무단 출국 관련 범죄의 수;
- (c) 지역, 성별, 신청자 연령별로 구분된 여행 허가 신청 건수, 승인 건수, 거부 건수 및 그 사유.

2. 거주지 선택의 자유

35. 제3차 및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기간 동안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고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가족을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지도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강압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 권리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3. 본국으로의 귀환의 자유

36. 제3차 및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귀국 자유에 관한 권고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허가 없이 국외로 나간 사람들은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귀국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의 가족들은 종종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기도 한다. 그 결과, 탈북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들에 더해, 제2의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권고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가족 상봉 문제는 국제 포럼에서 계속해서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C. 식량권

37. 식량권 실현을 위한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a) 영양; (b) 식량 가용성; (c) 식량 접근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는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거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생활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38.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량권과 관련된 15개 권고안(식량 관련 9건⁵⁵, 영양 관련 2건⁵⁶, 식량 및 영양 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련 5건⁵⁷)을 지지하고 4건을 언급했다. 제4차 검토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국은 15개 권고안을 지지했다

⁵⁵ A/HRC/42/10, 제126.104, 126.151, 126.154, 126.156, 126.157, 126.158, 126.159, 126.160항 및 126.161항.

⁵⁶ 동서, 제126.152항 및 제126.188항.

⁵⁷ 동서, 126.63–126.66항.

(식량 관련 8건,⁵⁸ 영양 관련 2건⁵⁹ 및 보건, 교육, 영양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협력 관련 4건⁶⁰)을 언급하고, 4.⁶¹ 국제 협력에 관한 권고 사항에는 유엔 기관들이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나,⁶²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국가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

1. 영양

39.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유아 사망률과 영양실조를 더욱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행동, 그리고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지지했다.⁶³ 국민의 보건 서비스 및 영양 접근성을 측정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인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3.2의 이행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⁶⁴ 정부는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 감소를 “놀라운 개선”이라고 보고했다.⁶⁵ 유엔이 추정한 전국 평균 발육 부진율⁶⁶은 실제로

2021년 25.7%에서 2024년 16.6%로 감소했으며,⁶⁷이는 긍정적인 진전이다. 제4차 검토 기간 동안, 해당국은 아동의 영양 및 질병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 영양 및 질병 관리에 관한 권고 사항을 지지했다.⁶⁸ 또한 정부는 식품의 다양성을 높여 국민의 식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했다.⁶⁹ 발육 부진율의 개선과 식품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동 영양에 관한 지지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이다. 특별보고관은 해당국이 이 분야의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권에 중점을 둔 차기 전국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 (a) 영양 보충 프로그램의 대상 인구 중 혜택을 받은 비율;
- (b) 국제 기구로부터 식량 및 의료 지원을 받은 인원 수;
- (c) 보고 기간 동안 최소 식이 에너지 섭취 수준 이상으로 향상된 인구의 비율;
- (d)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지속가능발전목표(SDG) 3.2항 참조).

2. 식량 확보

41.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주기 동안 식량 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고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4차 주기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⁵⁸ A/HRC/58/11, 제130.41, 130.42, 130.101항 및 130.108–130.112항.

⁵⁹ 동서, 제130.188항 및 제130.189항.

⁶⁰ 동서, 제130.36, 130.37, 130.39 및 130.40항.

⁶¹ A/HRC/42/10, 126.63–126.66항.

⁶² A/HRC/58/11, 제30.36항, 제130.37항, 제130.41항 및 제130.42항.

⁶³ A/HRC/42/10, 제126.160, 126.164 및 126.188항.

⁶⁴ 2019년 출생 1,000명당 비율은 7.7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8명이었다.

⁶⁵ https://planipolis.iiep.unesco.org/sites/default/files/ressources/korea_dr_vnr_2021.pdf, 16쪽 참조.

⁶⁶ 발육 부진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및 발달 장애를 말한다.

(⁶⁷)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치는 <https://openknowledge.fao.org/server/api/core/bitstreams/e612e779-ec47-44c2-a3e0-499569c3422d/content>, p.1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⁶⁸ A/HRC/58/11, 제130.118항, 제130.188항 및 제130.189항.

⁶⁹ A/HRC/WG.6/47/PRK/1, 제56항.

대한민국은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을 늘리고 국내 식량 안보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지지했다.⁷⁰

42.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영양 부족 비율은 2004~2006년 기간의 인구 34.3%에서 2020~2022년 기간에는 45.5%로 증가했다.⁷¹ 정부는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국가 보고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식량 자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아직 그 진전은 불분명하며, 식량 안보 달성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는 아직 없다.

43. 특별보고관은 채택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⁷²

- (a) 도·시·군별, 성별, 소득 5분위별, 그리고 장애인, 노인, 수감자 등 취약 계층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식량 불안정 관련 데이터;
- (b) 국내 농업 생산 강화를 위한 공공 예산 지출 비중;
- (c) 정부 지출에 대한 농업 지향 지수⁷³(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a.1 참조);
- (d) 성별에 따른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3.2 참조);
- (e) 국내 생산, 수입 및 식량 원조를 통해 조달된 주요 식료품의 1인당 공급 비율.

3. 식량 접근성

44.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제3차 주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량 접근성과 관련된 5개 권고안을 지지하였으며,⁷⁴ 제4차 주기에서는 국내 식량 접근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고, 공공 식량 배급이 소외되고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식량 접근성 관련 4개 권고안을 지지하였으며,⁷⁵ 식량 보장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라는 권고안도 지지했다.⁷⁶

45. 보편적 정례 검토(UPR) 제3차 및 제4차 주기 사이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주로 여성들이 주도하는 비공식 시장 활동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저하되었다. 반면, 정부는 국영 상점에서 곡물 판매를 일원화함으로써 주요 곡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지지된 권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식량 배급 시스템은 여전히 차별적이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주민, 장애인, 구금 시설 수감자 및 여성 등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46. 국가는 차별 없는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별보고관은 지지된 권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⁷⁰ A/HRC/58/11, 제130.108항.

⁷¹ FAO, IFAD, UNICEF, WFP 및 WHO의 추산치,
<https://openknowledge.fao.org/server/api/core/bitstreams/1f66b67b-1e45-45d1-b003-86162fd35dab/content>,
152쪽 참조.

⁷²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HRIndicators/참조SDG_Indicators_Tables.pdf, 표 2.

⁷³ 농업 지향 지수는 정부 지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⁷⁴ A/HRC/42/10, 126.104, 126.151, 126.156, 126.159 및 126.161항.

⁷⁵ A/HRC/58/11, 130.101, 130.110, 130.41 및 130.42항.

⁷⁶ 동서, 130.109항.

- (a) 영양 부족 유병률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1.1도 참조);
- (b)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유병률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2.1 참조);
- (c) 대상 인구 집단의 주요 식품 소비 중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되는 비율;
- (d) 국영 상점에서 판매되는 충분한 양의 주곡을 구입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특히 농촌 지역);
- (e) 정부로부터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은 5세 미만 아동, 임산부 및 수유부, 노인, 장애인 및 수감자의 비율;
- (f) 각 구금 시설별 최소 영양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제공받은 수감자의 비율.

D. 노동권

47. 근로권 및 관련 권리의 실현을 향한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a) 양질의 생산적 일자리에 대한 접근; (b)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조건; (c) 훈련, 기술 향상 및 전문성 개발, 그리고 (d) 강제 노동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6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근로할 권리를 인정하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포함되며, 당사국들은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8. 보편적 정례 검토 제3차 및 제4차 주기 동안, 해당국은 근로권과 관련된 권고 사항의 대다수를 지지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그 협약을 비준하라는 두 가지 구조적 권고 사항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강제 노동 보호와 관련된 6개 권고 사항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4차 주기 동안, 해당국은 관련 권고 사항 두 가지를 지지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 가입 가능성을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⁷⁷

1.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에 대한 접근

49.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항, 특히 고용 기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법제를 강화하라는 한 가지 권고안을 지지했다.⁷⁸ 제4차 검토에서는 회원국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권고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혼 여성은 국가 배정 일자리에서 면제되어 생계를 위해 비공식 시장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들은 더욱 제한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으며, 공식 노동 시스템에 평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차단되었다. 양질의 생산적인 일자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 원칙은 가족 배경에 관계 없이 여성, 장애인, 농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조건

50.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저임금 노동을 종식하라는 권고를 지지하지 않았다.⁷⁹ 그러나 제4차 검토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⁷⁷ A/HRC/58/11, 제130.21항 및 제130.22항.

⁷⁸ A/HRC/42/10, 제126.180항.

⁷⁹ 동서, 제127.27항.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법적 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지지했다.⁸⁰

51. 이 주에서는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 대부분이 급여, 식량 배급 또는 현물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제공 되더라도 대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3년 10월, 정부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했으나, 인상 후에도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급여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는 곡물 판매 통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급여를 지급 카드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 국영 곡물 상점에서만 식료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2. 2025년 5월 29일, 국가는 ‘노동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노동 수요를 결정하고 모든 시민을 직장배정하는 노동관리 체제의 규정을 통합하였다. 이 법은 동원된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 및 단체가 규정에 따라 근로 조건, 생활 조건 및 노동 보호 조건을 보장하고, 근로 성과에 기초하여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및 제23조). 아직 노동 조건의 개선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국가는 다음 지표를 포함한 법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 (a) 노동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급여표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성별 및 연령별 구분);
- (b) 노동법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배정 일자리 제도를 개정하는 것.

3. 교육, 기술 향상 및 전문성 개발

53. 이 분야와 관련하여 제안된 권고 사항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해당 지역의 경제적·지리적 여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2023년에 전자, 임업, 의류 산업 등 17개 분야에 걸쳐 100개 이상의 직업학교를 신설했다고 보고했다.⁸¹ 이는 긍정적인 발전 단계이지만, 특별보고관은 학생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하지 않고 특정 지역의 경제적·지리적 특성에 맞춘 교육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른 주민 간의 격차와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 당국은 이러한 직업 훈련이 차별 없이 일할 권리와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을 추구할 권리를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4. 강제 노동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54.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⁸²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제 노동에 관한 어떠한 권고안도 지지하지 않았으나, 아동 노동에 관한 한 가지 권고안은 지지했다.⁸³ 제4차 검토에서는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라는 10건의 권고안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안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으며, 모든 강제 노동 혐의를 “음모적 선전”으로 간주했고⁸⁴ 아동 노동은 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⁸⁴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선택과 수락이 어떻게 보장되었는지, 해외 근로자를 포함한 보수 규모, 구금 중 노동, 병역 기간 중 비군사적 노동, 성인과 아동의 노동 동원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할 것을 강력히 권고받는다.

⁸⁰ A/HRC/58/11, 130.92항.

⁸¹ A/HRC/WG.6/47/PRK/1 참조.

⁸² A/HRC/42/10, 126.188항.

⁸³ A/HRC/58/11, 78항.

⁸⁴ 동서, 제82항.

E. 장애인의 권리

55.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a) 법 앞의 평등 및 인격 보호; (b) 적절한 생활 수준, 보건 또는 교육에 대한 접근을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에 의한 직간접적 차별; (c) 생계 기회의 평등을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공공 및 민간 주체에 의한 직간접적 차별; (d) 의사 결정 참여를 포함한 특별 조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에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56.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해당국은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총 17건의 권고안을 지지했다. 이 중 4건은 협약의 원칙과 요건을 국내 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장애인보호위원회와 해당 지역 내 타국의 관련 국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라는 구조적 권고안이었다.⁸⁵ 제4차 주기 동안, 해당국은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총 27건의 권고안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다른 권리 분야에 비해 권고안 수가 현저히 많을 뿐만 아니라 수용률 또한 더 높은 수치였다. 해당국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는 6건의 구조적 권고안⁸⁶과, 장애인 권리위원회와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심화하라는 2건의 권고안을 지지했다.⁸⁷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8건의 일반 권고안을 추가로 수용했다.⁸⁸ 두 주기 모두에서 높은 수용률은 장애인의 권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적 용어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1. 법 앞의 평등과 인격의 보호

57.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⁸⁹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지지했다.⁹⁰ 제4차 검토 과정에서 국가는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라는 것을 포함하여 이 분야의 두 가지 권고안을 지지했다.⁹¹

58. 헌법과 노동법 제4조는 “신체 건강한 시민”이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 노동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은 국가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낙인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

59. 지지된 권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a)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전 단계에서 장애인(지적 및/또는 정신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 및 저신장인을 포함)과 수행한 긴밀한 협의 횟수 및 협의에 참여한 장애인의 비율;⁹²

⁸⁵ A/HRC/42/10, 제126.72, 126.77, 126.85 및 126.194항.

⁸⁶ A/HRC/58/11, 제130.199–130.201항, 제130.203항 및 제130.205항.

⁸⁷ 동서, 제130.200항 및 제130.202항.

⁸⁸ 동서, 130.166, 130.167, 130.199–130.203 및 130.205항.

⁸⁹ A/HRC/42/10, 126.105, 126.106 및 126.197항.

⁹⁰ 동서, 126.107항.

⁹¹ A/HRC/58/11, 130.192항.

⁹² CRPD/C/PRK/CO/1, 제6(d)항.

- (b)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 사건에 대해 접수된 민원 건수 및 조사 및 판정이 이루어진 민원 건수.

2. 적절한 생활 수준,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접근

60.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⁹³, 복지⁹⁴, 교육·식량·보건⁹⁵, 주거 접근성⁹⁶ 등 이 분야의 모든 권고안을 지지했다. 제4차 검토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분야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10개 권고안을 지지했다. 여기에는 의료 및 영양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3개 권고안⁹⁷— 특히 농촌 지역의 아동, 장애인, 여성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무료이며 양질의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여성, 아동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 —,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4개 권고안,⁹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정부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정부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는 권고 1건이 포함되었다.⁹⁹

61. 이 나라에서는 국가에 의해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외딴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거나 지적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외딴 지역의 대부분의 기반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특수 학교의 수는 제한적이지만, 이들은 직업 훈련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62. 특별보고관은 지지된 권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 (a) 신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공 건물의 비율;
- (b) 핵심 필수 의약품 세트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의 비율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3.b.3 참조);
- (c)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
- (d) 장애인을 위한 의료 치료, 치료, 보조 기기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 및 보장 비율.

63. 장애 아동의 양질의 교육 접근성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가가 다음을 포함한 지표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 (a) 장애인 중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총 등록률;
- (b)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 아동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 시범 교실 수;
- (c)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용적 교육 연수 프로그램 수;
- (d)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이용 가능한 복지 및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적인 포용 교육 인식 제고 캠페인 횟수.

⁹³ A/HRC/42/10, 제126.155항.

⁹⁴ 동 문서, 제126.107항 및 제126.102항.

⁹⁵ 동서, 제126.157, 126.193 및 126.196항.

⁹⁶ 동서, 제126.198항.

⁹⁷ A/HRC/58/11, 제130.127항, 제130.128항 및 제130.143항.

⁹⁸ 동 문서, 130.135, 130.142, 130.144 및 130.205항.

⁹⁹ 동서, 130.191항.

3. 생계 기회의 평등

64. 제3차 및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주기 동안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권고 사항은 없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와 능력에 따라 특수한 “경노동” 작업장에 배치되어 생계 수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제도는 통합을 저해하고 낙인을 더욱 강화한다.

4. 의사 결정 참여를 포함한 특별 조치

65.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주기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분야에서 두 가지 권고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기후 변화 완화 전략의 수립 및 이행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¹⁰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함이었다.¹⁰¹ 제4차 주기에서는 공공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공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¹⁰²을 포함한 4개의 권고안을 지지하였으며, 이동성 지원을 위한 2개의 권고안, 즉 적절한 보조 기기나 이동 장치를 제공하고 모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을 보장할 것¹⁰³을 지지했다.

66.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의사결정 직위나 공직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¹⁰⁴ 또한 장애인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적 및/또는 정신사회적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 유형의 대표자들과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도 없다.

67. 지지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을 포함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a) 재정 지원, 이동 지원 및 훈련 등 공공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또는 우대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 및 비율;

(b) 지역 내 이동 시 허가제 기반의 장벽을 해소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권의 수와 비율.

V. 결론 및 권고

68. 보편적 정례 검토의 성격과 국제 인권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는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도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권고 사항 이행의 진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관련 권고안을 지지함으로써 개선을 약속한 여러 인권 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사형 집행 현황을 검토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기 위한 진전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제3국에서 강제 송환된 개인이 관련된 사례를 포함하여 국가 반역죄의 구성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수감자들을 단계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69. 유엔, 특히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유엔 국가팀 및 기관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및 물적 지원을 통해 권고 사항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구금자의 처우 개선 및

¹⁰⁰ A/HRC/42/10, 제126.112항.

¹⁰¹ 동서, 제126.199항.

¹⁰² A/HRC/58/11, 제130.193–130.196항.

¹⁰³ 동서, 제130.198항 및 제130.206항.

¹⁰⁴ CRPD/C/PRK/CO/1, 제56(a)항.

구금 조건 개선,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지원 및 관련 보고서를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농업, 식량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영양가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국가팀이 보충 영양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 시행은 물론, 농업 생산 및 공정한 분배 관행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식량권 및 건강권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 정례 검토(UPR) 이행 재정·기술 지원 자발적 기금을 통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¹⁰⁵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기구의 국제 직원들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직원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및 기타 주체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 사항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유엔 기구 및 프로그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주의 및 개발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이 핵심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70. 북한은 2017년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을 단 한 차례 방문한 것 외에는 특별절차 임무 담당자의 방문을 허용한 적이 없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5년에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장애인 권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보고된 바 없다.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이나 시민사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2017년 이후 어떠한 독립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보고관은 해당 국가가 유엔 인권 기구의 전문가들, 가급적이면 매년 최소 한 명의 임무 담당자에게 초청을 보내 정기적으로 인권 문제를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인권 개선 및 보편적 정례 검토 과정에서 지지된 권고 사항 이행 노력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본 보고서에 제안된 인권 지표를 활용하여 진전 상황을 추적하고, 중간 보고서를 통해 그리고 제5차 보편적 정례 검토 국가 보고서를 통해 그 발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선별된 권고 사항과 지표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은 다른 국가들이 기술적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그녀는 각국이 보편적 정례 검토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의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장려한다.

¹⁰⁵ www.ohchr.org/en/hr-bodies/upr/trust-fund-implementation 참조.

부록

생명권

번호	권고사항	지표
생명의 임의적 박탈 금지		
130.68	구금 시설의 환경이 구금된 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체적 및 비신체적 학대 또는 범죄로 인해 공식 조사를 받은 법 집행 공무원의 수 및 비율. 신체적 및 비신체적 학대 또는 범죄로 인해 공식 조사를 받은 법 집행 공무원의 수 및 비율. 여성 수감자 1명당 성평등 및 인권 기준(예: “여성 수감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여성 교정 및 지원 직원 수.
130.69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구금 조건을 보장하고, 구금 조건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구금 시설에서 비침습적 선별 검사 방법의 사용을 대안으로 하는 규정 또는 공식 정책의 채택에 관한 데이터.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 조건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수용된 구금자 또는 수감자의 수 및 비율. 2024년 11월부터 제5차 보편적 정례 검토 기간까지 유엔 인권 기구 및 국제 적십자위원회를 포함한 독립 기관이 구금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한 모니터링 횟수. 보고 기간 동안 석방된 “반국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의 수와 비율, 그리고 해당 기간 말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수감자의 수. 보고 기간 중 영양실조, 전염병 및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구금 중 사망자 수. 보고 기간 동안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통보한 사건 중 국가가 답변한 건수. 관련 회원국과 협의하여 확인된 사례 수.
개인의 강제 실종 또는 비자발적 실종		
130.30	건설적인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 특히 유엔 기구, 인권 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5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수유부 중 학교 급식 및 강화 혼합 식품과 같은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비율.
보건 및 영양		
130.130	향후 4년 이내에 예방 가능한 영아 및 산모 사망률을 현재 수준의 절반 미만으로 낮춘다.	

아니오	권고 사항	지표
		숙련된 의료 인력이 분만을 도운 출산의 비율(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 3.1.2도 참조).
		모성 사망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목표 3.1도 참조).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 시설을 갖춘 의료 시설의 비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 6.1.1 및 6.2.1도 참조).
	사형	
130.65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인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된 범죄의 수, 특히 1981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 당시 사형에 처할 수 없었던 범죄와 고의적 살인을 수반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
130.66	사형을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의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로 제한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의 수를 연령, 성별 및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유형 등의 요인별로 분류한 자료. 사형 집행 건수 및 방법(연령, 성별, 지역별 분류).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니오	권고 사항	지표
	영토 내 이동의 자유 및 국외 출국의 자유	
130.85	모든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강제 송환되어 국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수감된 수감자 수. 형법에서 삭제된 국내 무단 이동 및 무단 출국 관련 범죄 건수. 신청, 승인 및 거부된 여행 허가 건수와 그 사유(지역, 성별, 신청자 연령별 분류).
	영양	
130.118	아동의 영양 및 질병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영양 보충 프로그램의 대상 인구 중 혜택을 받은 사람의 비율. 국제 기구로부터 식량 및 의료 지원을 받은 인원 수. 보고 기간 동안 최소 식이 에너지 섭취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 인구의 비율.
130.40	보건, 교육, 영양 및 식량 안보 분야에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 (지속가능발전목표 목표 3.2 참조).

번호	권고 사항	지표
식량 가용성		
130.108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을 늘리고, 국내에서 지속적인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주(州), 성별, 소득 5분위, 장애인, 노인, 수감자 등 취약 계층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식량 불안정 관련 데이터. 국내 농업 생산 강화를 위한 공공 예산 지출 비중. 정부 지출에 대한 농업 지향 지수(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a.1도 참조). 성별에 따른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3.2도 참조). 국내 생산, 수입 및 식량 원조를 통해 조달된 주요 식료품의 1인당 가용량 비율. 영양 부족 유병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 2.1.1도 참조).
식량 접근성		
130.110	국내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공공 식량 배급이 소외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하도록 한다.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유병률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2.2.1도 참조). 대상 인구 집단의 주요 식품 소비 중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되는 비율. 특히 농촌 지역의 국영 상점에서 판매되는 충분한 양의 주곡을 구입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정부로부터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을 공급받은 5세 미만 아동, 임산부 및 수유부, 노인, 장애인 및 수감자의 비율. 각 구급 시설별 최소 영양 기준에 부합하는 식량을 제공받은 수감자의 비율.

근로권

번호	권고	지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조건		
~~130.92~~	~~국내외 모든 근로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법적 체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노동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급여표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노동법 제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배정 일자리 제도를 개정한다.~~

장애인의 권리

번호	권고	지표
법 앞의 평등 및 인격 보호		
130.192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전 단계에서 장애인과 실시한 심도 있는 협의 횟수, 그리고 지적 및/또는 정신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 저신장 장애인을 포함하여 협의에 참여한 장애인의 비율.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 사례에 대해 접수된 민원 건수 및 조사·판결된 민원 건수.
적절한 생활 수준,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접근		
130.128	특히 농촌 지역에서 아동, 장애인, 여성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고 경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신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공공 건물의 비율. 핵심 필수 의약품을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보건 시설의 비율(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3.b.3도 참조). 보조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 장애인을 위한 의료, 치료, 보조 기기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 및 적용 비율.
130.191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정부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장애인의 중등 및 고등 교육 총 등록률.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 아동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 시범 교실 수. 교사를 위한 포용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수.
130.143	무료이며 양질의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 아동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한다.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이용 가능한 복지 및 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포용성 인식 제고 캠페인의 횟수.
의사 결정 참여를 포함한 특별 조치		
130.194	장애인이 공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재정 지원, 이동 지원 및 훈련과 같은 공공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또는 우대 조치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 및 비율.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역 내 이동 시 허가제 장벽을 해소하는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권 수 및 비율.

번호

권고 사항

지표

130.198 적절한 보조 기기나 이동 장비를 제공하고 모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을 보장한다.

Advance edited version